

현안분석 2008-

입법평가 보고서 08-14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지적장애인 그룹홈 법제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Welfare Legislation for Disabled People
- With Focus on the Legislation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

연구자 : 김인철(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Kim, In-Chul

견진만(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Kyonne, Jin-man

William W. Boyer(University of Delaware)

윤광진(부연구위원)

Yoon, Kwang-Jin

2008. 11. 14.

국문 요약

1. 입법평가의 필요성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장애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제도를 포괄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없다는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법제가 사회적 수요에 따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제를 평가하고자 2007년 3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소속 법률제정추진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법률안의 개선을 위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제가 가장 잘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의 ‘지적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률인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과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지적장애인 복지사제도의 도입을 위해 일본의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을 별도로 살펴봤다.

2. 비교분석방법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을 채택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있어 한국의 법률안과 미국법률의 유사체계 잠정독립변인으로는 ‘연령의 구분, 지적장애범위, 기능적 한계범위, 영·유아에의 적용범위’를,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부분에 있어 잠정독립변인으로 ‘자립생활지원, 그룹홈 이용,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를 도출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부분에 있어 ‘지적장애인의 권리,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 설

치,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잠정독립변인으로 삼았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와 관련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를 잠정독립변인으로 설정했다.

3.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안 개선방안

분석결과, 지적장애 발생의 연령범위를 기존의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또는 그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적장애인 권리 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안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차별과 인권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안을 만들었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반 이상"임을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와 관련한 규정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언급했다.

그 밖에 일본의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을 참조할 때, 지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지적장애인 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지적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또는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률안 마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초안의 수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방법론이 갖는 내재된 한계성을 고려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의 법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지적장애인, 그룹홈, 비교분석, 자립생활지원

Abstract

Although it is necessary to help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their particular characteristics, there has been no legislation for their needs. This study focused on the draft of legislation for their rights to be served with diverse facilities such as group-home. In order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improving the draft of legislation, we compared it with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in U.S. Additionally, we considered the Japanese legisla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dopt the system educating and hiring social workers who counsel and support them in their demands.

As a result, we suggested extending when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occur under 18 to 19 years old in condition with receiving public welfare services. We, also, recommended specifically defining their rights not to be discriminated within their human dignity. Furthermore, we explored how to improve the research system of studying their actual conditions and reporting them legislatively. However, this study has the limit applying these alternatives in the field due to the intrinsic defec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in upcoming future, researchers have to study within more profound knowledge available in practice.

※ Key Words :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Group-home, Comparative Analysis, Assistance of Self-advocacy

입법평가 요약서

입법평가 요약서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목 차】

- | | |
|---------------------------------------|-----------------------------------|
| 제 1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입법평가의 개요 | 제 4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
| 제 2 장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실태 및 법제체계 | 제 5 장 요약 및 권고 |
|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 분석 | |

제 1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입법평가의 개요

1992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처음 채택된 <그룹홈>은 지적장애인의 주거와 사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 2005년 서울시 <그룹홈>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110개를 포함 전국 333개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그룹홈>은 입주기간제한과 실질적 사회적응 훈련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를 보완한 독립적 주거형태인 <자립홈>시설 (그룹홈의 발전된 형태)을 도입해 시험 운영 중이다. 이는 지적장애인정책이 <그룹홈>을 중심으로 한 ‘탈시설 수용방식’에서 <자립홈>을 기점으로 한 ‘자립생활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같은 시책을 뒷받침하

기 위해 2008년 4월 시설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이 마련되었지만, 수요자 중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토대가 될 ‘자립생활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장애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제도를 포괄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없다는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법제가 사회적 수요에 따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그룹홈>시설의 발전을 위한 법률안 상정에 초점을 두고 법률내용이 지적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적응 및 거주 개선을 도모하는데 적합하도록 정비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곧 해당 법제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 보다 실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 관련법을 평가하는 작업은 체계적이고 적실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40년대 세계 최초로 <그룹홈>을 설립한 후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립생활 모델’을 근간으로 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법 개정 및 시설 확충을 일구어 온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작업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적실한 법률안 구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 관련 시스템 및 법제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연구 결과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장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실태 및 법제체계

2007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지체인’ 용어를 ‘지적장애인’으로 바꾸면서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규정 외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법률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같은 법

를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7년 3월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장애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위 법률안이 지적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이행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본 법률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서비스기관과 전달체계에 관한 규정이다. 제4장은 지적장애인에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이고 제5장은 ‘벌칙’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중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과 관련하여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17조, 18조, 19조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7조는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에 관한 내용이고, 제18조는 복지시설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제19조는 복지서비스 실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에 관한 법률이다.

위 법률안은 지적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한 세부적인 내용이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미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진 복지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 분석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은 인과추론방식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사회체계들을 비교 분석하는 모형으로 각국 간의 체제 및 법률을 비교하기 유용하다. 이모형은 종속변수로 상정된 각종 현상이 각 비교 사례에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때, 사례 간 유사성은 그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그 상이성만이 설명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체계상의 유사점은 극대화시키고 그 차이점은 극소화시킴으로써 종속변인을 초래하는 설명변인들을 최대한 축소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에서 잠정독립변인인 측정항목을 추려내는 작업은 비교 분석의 수준과 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비교 분석의 논리를 구축함에 있어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잠정독립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관련 한국 법률안과 미국 법률을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 조사’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했다. 이중,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있어 한국의 법률안과 미국법률의 유사체계 잠정독립변인으로는 ‘연령의 구분, 지적장애범위, 기능적 한계범위, 영·유아에의 적용범위’를,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부분에 있어 잠정독립변인으로 ‘자립생활지원, 그룹홈 이용,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를 추려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

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부분에 있어 ‘지적장애인의 권리,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잠정독립변인으로 삼았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와 관련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실태 조사와 연차보고서’를 잠정독립변인으로 추려냈다.

제 4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비교분석 결과, 지적장애 발생의 연령 범위를 기존의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또는 그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능적 범위도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 있어 그 기능이 어느 한 가지만 해당하는 선에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수정해 법률적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단, 영·유아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 간주해야 함을 지적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 법률초안 개선안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연령의 구분	제 2 조 ① “지적장애인 등”이라 함은 18세 이전에	제 2 조 ① “지적장애인 등”이라 함은 <u>19세 이전(청소년 연령 기준)</u> 에
지적장애범위	제 2 조 ①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	

종속변인 / 참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기능적 한계범위	제 2 조 ①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조 ①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u>3가지 이상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u> 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영·유아에의 적용범위		제 2 조 ② <u>영·유아의 경우, 서비스와 지원이 없으면 후에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이거나 상당한 발달지체를 보이는 출생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 간주한다.</u>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안에서 언급한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

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관련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②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예방한다. ③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④ 초기개입서비스, 단기보호, 활동보조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발달장애인을 고령보호자가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 서비스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한다”는 조항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자립생활 지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룹홈 이용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실시하여야 한다.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관련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②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예방한다. ③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④ 초기개입서비스, 단기보호, 활동보조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발달장애인을 고령보호자가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서비스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안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차별과 인권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 수정안으로 “지적장애인은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 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신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기에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제공 ② 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둘 권리 등을 가진다. ③ 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④ 지적장애인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의 긴급한 신체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용으로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⑤ 지적장애인에 대한 약물의 과도한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용으로서 또는 그들을 위한 서비스, 치료, 재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약물의 사용금지 ⑥ 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지적장애인의 근친 또는 후견인이 사전공지 없이 해당 장애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1) 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옹호자로서 봉사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 또는 지원한다. (2) 보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해당연도에 달성된 위원회의 목표 ② 미달성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저해한 요인들 ③ 협의회의 활동지원 또는 실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3) 위원회는 원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정을 확인하고, 그들이 포괄적인 지역사회특별적응서비스 또는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지적장애인의 권리	<p>제 3 조 ①지적장애인 등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지적장애인 등은 적절한 치료, 복지서비스, 재활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들 권리를 가진다. ④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⑤지적장애인 등은 학대 또는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 3 조 <u>지적장애인은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기에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u> ① <u>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및 치과서비스 제공</u> ② 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들 권리를 가진다. ③ 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④ 지적장애인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의 긴급한 신체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u>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용으로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u> ⑤ 지적장</p>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p> 애인에 대한 <u>약물의 과도한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응으로서 또는 그들을 위한 서비스, 치료, 재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약물의 사용금지</u> ⑥ 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u>지적장애인의 근친 또는 후견인이 사전공지 없이 해당 장애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u> </p>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	<p> 제 7 조 ①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복지에 관련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각 시·도에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2. 지적장애인 등의 능력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적장애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 </p>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한 사항 4. 지적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거주 및 직업재활·고용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및 그에 필요한 관련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6. 지적장애인상담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적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8 조 ①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위원장을 포함하여 정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적장애인지원위원장은 최소한 매분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 8 조 (1) (지적장애인 지원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u>지적장애인을 위한 옹호자로서 봉사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 또는 지원한다.</u> (2) <u>보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해당연도에 달성된 위원회의 목표 ② 미달성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저해한 요인들 ③ 협의회의 활동지원 또는 실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u> (3) <u>위원회는 원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정을 확인하</u>

잠정 독립변인 / 종속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고, 그들이 포괄적인 <u>지역사회특별적응서비스 또는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실시한다.</u>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반 이상”임을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한 세부조항으로 “①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조사 및 지속적인 리더십교육, 직접서비스교육, 임상교육, 직원교육을 포함한 간학문적인 서비스 사전조사 및 학생과 특별연구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②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전문직 보조원, 정책입안자,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③ 시범 및 활동모델을 통하여 ②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서비스, 지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평가, 공공정책분석 등을 실시한다. ⑤ 실시된 활동 관련 정보가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자원임을 입증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보급한다”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1)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에 관한 제반적인 만

족도 (2) 지적장애인을 위한 제반서비스가 지적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선하였는지의 정도 ① 이용하는 서비스, 지원, 원조의 종류, 강도, 시기를 선택 및 통제 ②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 의 모든 활동에 참여 ③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 권침해 없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감금 또는 격리되지 않았는지, 지 적장애인을 위한 지원·원조에 접근 편의성”의 내용이 언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법률초안 개선안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운영위원회	제10조 ①복지센터는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 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운영위원 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①복지센터는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u>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적장 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 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 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u>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①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 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 진에 관한 체계적인 연	제11조 ① <u>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역량강화 를 위한 예비조사 및 지속적 인 리더십교육, 직접서비스교</u>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구를 위하여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육, 임상교육, 직원교육을 포함한 간학문적인 서비스 사전조사 및 학생과 특별연구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u> ② <u>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전문직 보조원, 정책입안자,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u> ③ <u>시범 및 활동모델을 통하여 ②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서비스, 지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u> ④ <u>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평가, 공공정책분석 등을 실시한다.</u> ⑤ <u>실시된 활동관련 정보가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자원임을 입증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보급한다.</u>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제12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의 현황 및 복지실태에 관련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12조 <u>명확한 측정 진보지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고 측정하여야 한다.</u> (1) <u>지적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에 관한 제반적인 만족도</u> (2) <u>지적장애인을 위한 제반</u>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주요 복지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 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서비스가 지적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선하였는지의 정도</u> ① 이용하는 서비스, 지원, 원조의 종류, 강도, 시기를 선택 및 통제 ②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 모든 활동에 참여 ③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원조에 접근 편의성. 그 밖의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 없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감금 또는 격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표 측정

그 밖에 일본의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을 참조할 때, 지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지적장애인 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지적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또는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률안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 초안의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방법론이 갖는 내재된 한계성으로 인해 위 결과의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한다.

제 5 장 요약 및 권고

첫째, 최대유사체계분석 기법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한국의 법률안과 미국의 법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잠정독립변인에 따른 비교대상

이 해당 법률에 그치고 있어 단순한 법률조항의 나열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지적장애인 관련 세부법령(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재개발 사업 및 신도시 건설 등에 있어 그룹홈 시설관련 규제 등)에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본 연구가 위 비교방법기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연구 설계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초안 개선안을 세부적인 조항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관련 세부법령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 관련 미국 법률을 바탕으로 한 운용례 및 판례 등을 소개하고 그 적용점을 찾아가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 밝힌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 성과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운용 실태를 반영한 개선안의 제고가 필요하다. 제2장 제1절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시스템의 실태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그 운용 실태가 법률적 맥락에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법률 내용이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다. 앞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의 운용실태와 해당 법률 및 조항과의 연결성을 수요자 중심에서 제고하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령, 그룹홈 시스템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시의 장애인을 위한 조례와 운용 실태의 연관성을 지적장애인의 요구에 맞춰 재조명하는 작업은 전반적인 법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색간지 삽입요청)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입법평가의 개요	29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29
제 2 절 입법평가의 대상	30
제 3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연구기대효과	32
제 2 장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실태 및 법제체계	35
제 1 절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시스템의 실태	35
1. 설립배경 및 발달	35
2. 유형별 역할과 기능	38
3. 행정체계	40
4. 운영행태	42
제 2 절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	50
1. 한국의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50
2. 미국의 지적장애인 관련 시스템 및 법률	61
3. 일본의 지적장애인 관련 시스템 및 법률	63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67
제 1 절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의 논리 및 측정항목	67

제 2 절 최대유사체계분석을 활용한 비교분석	69
1. 지적장애인 정의에 대한 법률(안) 비교	69
2.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안) 비교	74
3.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에 관한 법률(안) 비교	78
4.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법률(안) 비교	99
제 4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초안』 개선방안	115
제 1 절 지적장애인 정의에 대한 법률초안 개선안	115
제 2 절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118
제 3 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121
제 4 절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법률초안 개선안	126
제 5 장 요약 및 권고	131
참 고 문 헌	137
<부 록>	
지적장애인 등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초안	143

표 목차

<표-1> 그룹홈 현황	37
<표-2> 아동·성인 및 경증·중증에 따른 그룹형 모형	39
<표-3> 사회재활교사의 거주 근무형태에 따른 분류	44
<표-4> 구성원 인원내 따른 분류	45
<표-5>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일반회계 총괄	46
<표-6> 그룹홈 입주자 서비스 프로그램	48
<표-7>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의 인과추론방식	68
<표-8> 지적장애인 정의에 대한 법률(안) 비교	73
<표-9>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안) 비교	76
<표-10>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에 관한 법률(안)	84
<표-11>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법률(안) 비교	105
<표-12>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 법률초안 개선안	117
<표-13>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119
<표-14>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123
<표-15>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법률초안 개선안	128

제 1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입법평가의 개요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1992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처음 채택된 <그룹홈>은 지적장애인의 주거와 사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 2005년 서울시 <그룹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 110개를 포함 전국 333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그룹홈>은 입주기간제한과 실질적 사회적응 훈련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를 보완한 독립적 주거형태인 <자립홈>시설(그룹홈의 발전된 형태)을 도입해 시험 운영중이다.

이는 지적장애인정책이 <그룹홈>을 중심으로 한 ‘탈시설 수용방식’에서 <자립홈>을 기점으로 한 ‘자립생활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4월 시설장애인 ‘인권 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이 마련되었지만, 수요자 중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토대가 될 ‘자립생활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장애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제도를 포괄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없다는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법제가 사회적 수요에 따른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그룹홈>시설의 발전을 위한 법률안 상정에 초점을 두고 법률 내용이 지적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적응 및 거주 개선을 도모하는데 적합하도록 정비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곧 해당 법제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 관련법을 평

가하는 작업은 체계적이고 적실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40년대 세계 최초로 <그룹홈>을 설립한 후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립생활 모델’을 근간으로 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법 개정 및 시설확충을 일구어 온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작업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적실한 법률안 구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 관련 시스템 및 법제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연구결과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입법평가의 대상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주요 쟁점이 되는 조항으로는 2007년 10월 17일 개정되어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중인 장애인복지법 <그룹홈> 관련내용인 법률 제8652호의 제58조와 제59조가 있다. 이중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 각 호에서 언급한 시설의 서비스가 개별 장애인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시설종류의 지나친 세부적 구분은 시설사업 시행에 있어 제반 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2009년 12월 개정 예정인 법률의 내용은 장애인이 생활과 재할 및 직업 교육의 연관을 통해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서비스 인원 감축 및 예산 재분배’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채택될 ‘자립생활 모델’ 관련 법률 내용의 정당성 확립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 내용의 핵심이다.

또한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조항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언급된 ①항과 ②항에 따르면 중앙부처 또는 지방부처 내지 독지가에 의해 <그룹홈>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같은 시설 설치 주체의 다원화에 따라 해당 장애인서비스는 질적·양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통일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시설을 평가·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 내용의 또 다른 핵심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제를 평가하고자 하기에, 위 두 조항과 연관된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법률안은 2007년 3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소속 법률제정추진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표는 한국 장애인법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다듬어 그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으며, 본 연구는 그 내용을 선진복지국가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법률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3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연구기대효과

이상의 연구내용들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제가 가장 잘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의 ‘지적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조항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전문화될 것이다. 캐나다와 일본 역시 자립생활 모델을 근간으로 한 <그룹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미

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을 미국의 해당 관련 조항에 주로 맞추고자 한다. 이 같은 노력은,

① 지적장애인을 수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온 <그룹홈>제도 및 제반 서비스의 유용성을 법률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안의 효용성을 제고하여 장애인을 위한 법제를 해당 수요자들의 필요에 맞춰 보다 세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② 비교 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홈>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입법 활동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제 및 시스템이 자립생활모델로 전환하는 가운데 해당 조항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가려내 분석하는 작업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제를 구축하는데 공고한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③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제와 이를 근간으로 한 제도의 운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구상하는 작업은 지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④ 자립생활모델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제와 시스템의 개혁을 이뤄낸 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 현실에 맞는 법률 제정을 도모함으로써 발전과정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것이다.

제 2 장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실태 및 법제체계

제 1 절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시스템의 실태

1. 설립배경 및 발달

한국은 1981년 천노엘 신부에 의해 그룹홈이 최초로 설립(광주 엠마우스복지관¹⁾)되었으며, 그 목적은 정신지체인들도 지역사회안에서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가지며, 주민들과 똑같이 사회적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교육을 받고, 자립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992년 9월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장애인 그룹홈’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서울특별시 정신박약자복지관에서 1995년까지 6채의 그룹홈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에는 충북재활원 등이 설립되어, 1990년대 들어 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1992년부터 그룹홈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작하여, 2000년 53개소가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1997년 5개의 그룹홈에 예산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 21개소의 그룹홈에 예산을

1) 엠마우스 복지관은 운영목적에 따라서 4가지 형태로 그룹홈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육중심의 그룹홈은 개인의 능력에 알맞은 자조, 자립, 사회적응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 계획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향상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주거중심의 그룹홈은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에 따른 일만을 하게되며 자율적으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위탁생활교육중심의 그룹홈은 교육생의 가정사정, 교통이 불편할 경우, 부모의 노환으로 개인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육생의 개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그룹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는 일시이용을 중심으로한 그룹홈은 1박2일 동안 공동생활의 경험 혹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조재균, 2001).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그룹홈은 전국적으로 20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문적인 개입을 기초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며, 상당수가 본격적인 그룹홈 형태를 갖추는 과정의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그룹홈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산재해 있으나 그 정확한 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모든 그룹홈들이 어떤 한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 및 장애인 부모회와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는 순수 민간 차원의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그룹홈의 실태조사 연구는 1993년 11월, 박현숙의 “장애인 그룹홈 실태 조사 연구”가 처음이며, 1992년 9월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장애인 그룹홈의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정신박약자복지관에서 직접 장애인 그룹홈을 운영해온 실태를 보고서로 만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당국에 의해 8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서울의 4개 그룹홈들을 6개 집단(입주자, 생활보조원, 백업직원, 입주자부모/가족, 입주자 취업업체 감독관 및 그룹홈 지역주민)과 그룹홈 환경 및 비용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평가했을 때,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에서 시도한 그룹홈 위탁운영이 매우 고무적인 변화임을 입증하였다. 1999년에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발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및 모범 프로그램 개발2)”을 발간하여 지역 사회중심의 중간보호차원에서 중요

2) 장애인그룹홈 설치운영 지침 및 운영프로그램에서는 그룹홈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입주자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전문적 서비스기관의 지원 하에 운영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그룹홈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거주지역내에 위치해야 하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룹홈을 알리는 간판이나 표지 등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그룹홈 입주의 결정은 본인의 희망에 의

하게 인식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홈에 대한 실태 파악 후 그룹홈의 장애인복지 및 사회재활에서의 의의 등을 검토하고 정책 합의와 함께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하춘자, 2006).

<표-1> 그룹홈 현황

시·도	그룹홈수	시·도	그룹홈수
서울	116개소	강원	16개소
부산	23개소	충남	17개소
대구	10개소	충북	5개소
인천	23개소	전북	8개소
광주	6개소	전남	2개소
대전	15개소	경남	21개소
울산	6개소	경북	6개소
경기	55개소	제주	3개소

출처 : 보건복지부, 2007

그러나 기존 <그룹홈>은 입주기간제한과 실질적 사회적응훈련과의 연계성부족으로 지적장애인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를 보완한 독립적 주거형태인 <자립홈>시설 (그룹홈의 발전된 형태)을 도입해 시험 운영중이다. 이는 지적장애인정책이 <그룹홈>을 중심으로 한 ‘탈시설 수용방식’에서 <자립홈>을 기점으로 한 ‘자립생활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뜻하며, 그에 따른 법률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 운영주체가 구체적으로 한다고 장애인 그룹홈의 운영 및 지침에 대해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유형별 역할과 기능

그룹홈은 거주자의 수, 지역, 연령, 거주기간, 성별, 역사적 발달과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그것에 따라 역할과 기능도 다르며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룹홈의 형태를 그 크기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종합수용시설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주거시설(large community based residential facility)인 대집단가정(large group home)과 7-8명의 구성원을 가지며 대집단 가정보다는 가정적인 분위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집단 가정(small group home), 그리고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생각하고, 다른 동료를 형제로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집단위탁가정(group foster home)등이다.

삼성복지재단(1995)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촌형, 도시형으로 나누어 분류·개발하기도 하였으며 이배근(1991)은 연령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한국의 그룹홈 개발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 특히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집단가정은 남녀별 구분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령별 구별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18세를 기점으로 하여 18세 이하를 아동집단가정으로, 18세 이상을 성인 집단가정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을 위한 그룹홈으로는 재택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하는 CF(C=Child, F=family), 정신지체인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CI(I=Institu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을 위한 집단가정으로는 재택성인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을 AF형(A=Adult), 성인지체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가정 AI형으로 구분한다. 집단가정의 전문직 서비스 개입을 위해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상이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신지체아의 경우 특수학급교육의 대상이 되는 경도 정신지체아 및

특수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중등도 정신지체아는 교육적 측면의 서비스를 위주로 할 것이며, 중도 및 최중도 정신지체아는 행동수정, 생활훈련 및 치료적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므로 CF형은 경도 및 중도 재택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하는 CFS(S=Severely)으로 한다(최중도 정신지체아의 경우는 편의상 제외함). 이와 같이 경도 및 중도시설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가정을 CIM형, 중도시설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가정을 CIS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인정신지체인의 경우에도 경도 및 중도(中度)정신지체인은 직업교육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위주로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게 해야 할 것이며, 중도(重盜)정신지체인의 경우는 치료적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므로 경도 및 중도 재택정신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을 AFM형으로, 중도 재택정신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을 AFS형으로, 경도 및 중도 시설 정신지체인을 위한 AIM형, 중도시설 정신지체인을 위한 AIS형 집단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다.

<표-2> 아동·성인 및 경증·중증에 따른 그룹형 모형³⁾

그룹형 모형	대 상	연 령	장애의 정도	전문직 서비스 개입
CFM형	재택	18세이하 아동	輕度, 中度	학교 및 사회교육, 직업 및 생활훈련
CFS형	재택	18세이하 아동	重度	행동수정, 치료, 생활훈련
CIM형	시설	18세이하 아동	輕度, 中度	학교 및 사회교육, 직업 및 생활훈련
CIS형	시설	18세이하 아동	重度	행동수정, 치료, 생활훈련
AFM형	재택	18세이하 아동	輕度, 中度	직업 및 사회교육, 가정생활 지도

3) C=child, F=family, A=adult, I=institution, M=mildly & moderately S=severely

그룹형 모형	대 상	연 령	장애의 정도	전문직 서비스 개입
AFS형	재택	18세이하 아동	重度	행동수정, 치료, 생활훈련, 직업훈련
AIM형	시설	18세이하 아동	輕度, 中度	직업 및 사회교육, 가정생활 지도
AIS형	시설	18세이하 아동	重度	행동수정, 치료, 생활 및 직업훈련

3. 행정체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운영 공공지침(보건복지부 2006)에 따르면 지역재활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지역재활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며, 지역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지역재활시설은 지역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내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하며, 지역재활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며,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한다. 장애인, 장애인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참여토록 하여 장애인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

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룹홈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입주자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한다.

(1) 장애인 그룹홈 설치·운영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역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 규칙 제34조 관련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내지 제51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6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2) 장애인 그룹홈 보조금 지원

2004년부터 지방 이양된 24개 장애인복지사업에 장애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도 포함된다. 이에 기존의 장애인 그룹홈 국가보조 사업 수행시 그룹홈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 및 지방비로 보조하며, 장애인 생활시설 부설 그룹홈에 대한 주택 임차료 지원은 국고 30%, 지방비 70%로 하며, 그룹홈 운영비 지원은 국고 40%, 지방비 60%였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지만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거의 4:6의 비율은 유지하고 있다.

(3) 보조금 교부신청

그룹홈 운영주체는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을 경유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수행자의 성실성,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보조금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수행에 다른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운영주체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운영비정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이 당초 보조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재활시설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자 현황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행태

(1) 운영주체

그룹홈의 운영주체는 법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개인, 부모회 등 다양하다. 그룹홈이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설치되어 있

고, 독립된 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주체마다 다른 행정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그룹홈의 행정처리 절차 및 방법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복지관, 시설등과 차별화된 즉 그룹홈의 특성이 고려된 행정처리 시스템이 아닌 운영주체의 기존 행정시스템에 따라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행정처리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의 입장에서는 실무애로점이 다르며,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사회복지시설도 최근 과학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관의 운영을 체계화한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운영주체 기관의 행정체계를 모두 그룹홈에 반영하기에는 그룹홈만의 독특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주거서비스의 현장일지라도 행정적 관리체계상 장애인시설로 분류되는 그룹홈의 경우, 그룹홈 운영의 표준화된 작업(규정화, 메뉴얼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람에 따라 변동 가능한 직접서비스 및 행정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진우정보’ 라는 관리시스템이 개발, 활용되어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물론 실무선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수정,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개발, 관리하는 협회와 기관간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충분히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2) 인력 및 재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및 모범프로그램 개발에 따르면 사회재활교사의 근무조건은, 24시간 근무(38.9%), 근무형태가 거주근무(89.6%), 비교대 근무(84.4%), 보수가 100만원 미만(56.0%)가 가장 많았다.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의 경우 주로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1998)의 지침에서는 생활지도교사⁴⁾의 경우 24시

4) 우리나라 보건복지부(1998)의 지침에서는 생활지도교사(care provider)의 경우 24시

간 그룹홈에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근무조건은 열악하며,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현재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은 대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으며, 운영주체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이 1-2개인 경우, 인력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3> 사회재활교사의 거주 근무형태에 따른 분류

형 태	거주방법	야간 거주 여부	주택 형태
동거형	완전동거 하숙동거 동일가옥 동거	있음 있음 있음	단독 주택 하숙 아파트
인접형	통근, 숙직 통근, 야간귀가	있음 없음(연락유지)	단독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부재형	시간제 방문	없음	아파트

그룹홈 담당 직원의 경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이러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고 단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지원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거나 자신의 업무가 단순히 그룹홈 장애인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재활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의 경우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사회재활교

간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및 모범 프로그램 개발, 1999).

사들은 장애인들이 출근한 낮 시간 활동은 행정적인 업무나 그룹홈 관리, 운영기관에 출근하여 교육이나 회의 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운영주체의 경우 보호작업장이나 기타 타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4> 구성원 인원 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소공동생활가정 (small group home)	2-10명 이하의 거주자가 있으며 낮에는 훈련이나 교육 또는 경제활동을 지속한다. 그룹홈의 전형적인 형태로 일반적으로 공동생활가정하면 이 형태를 지칭하며 우리나라 대다수의 그룹홈도 여기에 속한다.
중공동생활가정 (medium group home)	중공동생활가정은 11-20명 이하의 거주자가 생활하는 형태의 공동생활가정이다.
대공동생활가정 (large group home)	20-40명의 거주자가 생활하며 전문화된 직업적인 직원의 수가 많이 요구되고 중증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거주자의 수가 많아 공동생활가정의 효과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집단 가정의 경우 일반시설과 규모가 비슷하므로 이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합공동생활가정 (mixed group home)	성인정신지체인 및 정신질환자나 기타 장애인을 함께 생활하게 하는 가정으로 훈련보다는 일상생활을 위한 장소로 제공된다.
양친가정 (foster family care)	2-5명의 정신지체인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익히게 하는 목적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주로 아동들이 대상이 된다.
아파트 프로그램 (apartment program)	서로 근접한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정신지체인을 직원이 순회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지지와 지원을 보내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립생활을 돕는 공동생활가정의 한 프로그램이다.

제 2 장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실태 및 법제체계

그룹홈에서는 사회적응훈련과 자립훈련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그룹홈은 1980년도 후반 설치되기 시작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생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확대되기 시작했다. 각 복지관의 부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그룹홈은 장애인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예산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룹홈 운영 복지관들은 그룹홈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97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센터와 함께 이용시설로서 복지관 예산과는 별도로 그룹홈 운영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를 받게 되었다.

그 후 그룹홈은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면서 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설치 신고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복지관 부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그룹홈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은 한 주체로서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지역사회재활 시설이면서도 생활이 주가 되는 그룹홈은 시설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관리, 예산운영, 프로그램제공, 지역사회 유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은 발전적인 그룹홈의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5> 2006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일반회계 총괄 (단위: 천원)

시·도명	사업량 (개소)	장애인복지사업 일반회계 총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 융자금	자부담 기타
합계 A=(B+E)	528,885,	281,538,457	172,935,853	108,602,604	0	0
통지금액계 B=(C+D)	528,841	236,399,091	150,366,170	86,032,921	0	0

제 1 절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시스템의 실태

시·도명	사업량 (개소)	장애인복지사업 일반회계 총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 용자금	자부담 기타
서울(C)	77,834	32,081,435	15,830,284	16,251,151	0	0
소계(D)	451,001	203,955,651	134,291,084	69,664,567	0	0
부산	42,497	16,753,503	11,217,331	5,536,172	0	0
대구	27,157	9,951,195	6,749,489	3,201,706	0	0
인천	21,675	11,188,340	7,175,919	4,012,421	0	0
광주	15,190	7,355,478	4,695,600	2,659,878	0	0
대전	13,823	7,128,321	4,456,654	2,671,667	0	0
울산	5,851	5,818,392	3,354,708	2,462,624	0	0
경기	70,343	31,398,346	20,938,715	10,459,631	0	0
강원	21,295	13,256,731	8,440,424	4,816,307	0	0
충북	17,604	9,245,369	6,080,655	3,164,714	0	0
충남	28,718	13,179,838	8,742,774	4,437,064	0	0
전북	44,520	17,405,145	11,736,318	5,668,827	0	0
전남	51,638	17,594,968	12,248,401	5,346,567	0	0
경북	42,792	21,293,333	13,837,602	7,455,731	0	0
경남	41,812	18,076,456	12,014,181	6,062,275	0	0
제주	6,090	4,311,297	2,602,313	1,708,984	0	0
미통지금액 (E)	44	45,251,371	22,614,485	22,636,886	0	0

출처 : 하춘자, 2006

그룹홈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하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용료의 기준은 계시관 또는 홈페이지

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이용료를 면제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단, 1회성 프로그램의 경우인 나들이, 캠프, 수학여행, 기관견학 등에는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3)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5)

그룹홈의 서비스는 그룹홈의 각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의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가정환경, 문제행동,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 모두 철저히 파악하여 개별화의 원리에 입각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서 상에는 프로그램의 영역을 6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그룹홈 입주자 서비스 프로그램

사 업 명		세 부 사 항
독립생활	자조생활	스스로 개인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일의 처리를 한다. (이 닦기, 목욕, 생리처리 등)
	가정관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처리를 한다. (청소, 대문관리, 안전관리 등)
	식생활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밥 짓기, 라면 끓이기, 반찬 만들기)
	의생활	스스로의 생활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빨래, 계절에 알맞은 옷의 선택, 치장 등)

5)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입주 장애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만을 꾀하기 보다는 그들이 일반인의 인식속에 수용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패턴을 습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입주자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상인들과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유사점은 최대화하도록 유도하며, 일반 시민들의 포용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이정규, 1995. P 178; 공동생활가정실태조사 및 모범프로그램개발, 1999. P 101).

제 1 절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시스템의 실태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여가생활	개인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여가를 보낸다. (수집, 화훼, 음악감상, 볼링 등)
사회적응 및 활동지원	물품의 구매, 이웃의 접대, 공공기관의 이용 등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고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켜 이동 할 수 있는 능력(대중교통수단의 이용)등을 기른다.
직업생활 지원	취업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취 업지 탐색 및 취업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다.
가족과 주민과의 유대	가족의 지속적인 관계를 촉구하며, 거주인의 복지에 계속적인 관심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출처 :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 1998: 222

대부분 그룹홈들의 서비스는 연간 계획과 그룹홈의 상황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시된다. 여기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입주자가 처음 들어오는 경우 그 사람의 현재의 수준에 대한 각 측면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2) 대상 장애인에 대해 직원이 관찰한 내용을 전직원이 모여서 그 대상자에 대해 협의와 결정을 통해 개별교육프로그램(Individual Planned Programing)을 작성하여 실시하는데 1개월에 1회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도 한다. 그룹홈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개인위생 프로그램, 버스타기, 외모에 대한 프로그램이며 이와 동시에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그 후 차츰 가정관리나 자립생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의 고유한 욕구에 적당한 프로그램이 요구될 경우 그 프로그램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룹홈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면 그 영역은 개인위생, 가정관리, 자립생활, 여가생활, 사회적응, 정서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제 2 절 지적장애인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

1. 한국의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2007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지체인’ 용어를 ‘지적장애인’으로 바꾸면서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규정 외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법률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7년 3월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장애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률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위 법률안이 지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이행하고자 한다. 특별히 지적장애인의 거주문제와 관련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에 관한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법률(초안)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있다.⁶⁾ 제1장은 총칙으로 본 법률안의 목적과 용어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서비스기관과 전달체계에 관한 규정이다. 제4장은 지적장애인

6)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정리자료』, 2008년 4월, 19면 참조.

에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이고 제5장은 ‘별칙’규정에 관한 것이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법률은 제4장의 복지서비스 부분에 해당하기에 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제13조 (지적장애인 상담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적장애인상담원을 둔다.

제14조 (지적장애인상담원) ①시·군·구의 지적장애인상담원 중 1인 이상은 지적장애인 복지사이어야 한다.

②지적장애인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등에게 전문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실시 및 직업보조인에 의한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시 지적장애인 등의 우선 고용에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주가 지적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직업전환 및 적합 직종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적장애인 등의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적장애인 가족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단기보호시설, 위탁가정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전관리 등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들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복지시설 이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들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지서비스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들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적장애인 복지사) ①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 지적장애인시설 또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지적장애인 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지적장애인 복지사 자격취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여 평생복지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영유아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지적장애인의 공보육 및 통합보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제23조 (학령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료 교사와 직업 교사의 교육, 파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지적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적장애 전담 장학사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년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료교사와 직업교사의 교육, 파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적장애전담 장학사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성인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 지적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내 등록 지적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7)

이중 지적장애인의 거주와 관련한 법률은 제17조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제18조 복지시설 이용, 제19조 복지서비스 실시에 내용으로 정리된다.

7)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정리자료』, 2008년 4월, 26면 참조.

(2)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기타조항(초안)

위에서 언급한 제4장의 복지서비스를 제외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기타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조항은 지적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이나 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장애인 등의 잠재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지적장애인 등”이라 함은 18세 이전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지적장애인 등의 범주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장애인을 포함하며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조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 ①지적장애인 등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지적장애인 등은 적절한 치료, 복지서비스, 재활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둘 권리 등을 가진다.

④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⑤지적장애인 등은 학대 또는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 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 4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3조의 지적장애인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과 이에 필요한 제반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조치 및 예산집행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두어야 한다.

제 5 조 (경비의 우선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4조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협조체제의 구축) 국가는 제4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 3 장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등 >

제 7 조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①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복지에 관련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각 시·도에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2. 지적장애인 등의 능력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적장애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거주 및 직업재활·고용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및 그에 필요한 관련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6. 지적장애인상담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적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8 조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위원장을 포함하여 성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지적장애인지원위원장은 최소한 매분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 9 조 (지적장애인복지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복지 및 권익옹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의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2. 지적장애인 등의 판정, 복지실태 파악 및 필요한 조사 및 지도
3. 지적장애인 등의 능력개발, 교육 및 고용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옹호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적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원조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

③복지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 복지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복지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복지센터는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지적장애인연구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지적장애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의 현황 및 복지실태에 관련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조

사의 내용과 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들의 주요 복지시책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장 벌 칙 >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을 이용하여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를 한 자
2. 지적장애인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3. 지적장애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

제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상 알게 된 지적장애인 등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지적장애인 등을 공중에 관람시키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⁸⁾

이상의 내용은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내용을 제외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조항이다.

(3)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법률안의 문제점

제1장에서 언급하였듯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법제는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제59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58조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

8)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정리자료』, 2008년 4월, 27면 참조.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내용이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대상에 맞춰져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지적장애인의 재활 및 직업교육의 연관을 통해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적인 내용이 가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에도 적용된다.

제59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17조, 18조, 19조의 내용을 들 수 있다.⁹⁾ 전술한 바와 같이 제17조는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에 관한 내용이고, 제18조는 복지시설 이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제19조는 복지서비스 실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에 관한 조항이다.

위 법률안은 지적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킬만한 세부적인 내용이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미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진 복지선진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시스템 및 법제의 마련이 가장 앞서있다고 판단되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한국의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9)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정리자료』, 2008년 4월, 25면 참조.

2. 미국의 지적장애인 관련 시스템 및 법률

(1) 미국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 및 시스템

미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은 미합중국법전 제42편(보건 및 복지) 제144장(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에 나와 있다. 구성은 제1절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제2절 가정지원, 제3절 발달장애인을 원조하는 직접지원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절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A부 일반조항, 제B부 주 발달장애협의회에 대한 연방지원, 제C부 권리보호 및 옹호, 제D부 전국 대학 발달장애 교육·연구·서비스 센터망, 제E부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개념은 제1절 제A부 일반조항의 제15002조 (8)에 나타나 있는데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8) 발달장애 (A) 일반 “발달장애”는 다음과 같은 만성적인 중증장애를 말한다. (i)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중복손상이 원인이다. (ii)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난다. (iii)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iv)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영역 중 3가지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갖는다. (I) 자기관리 (II) 수용 및 표현언어 (III) 학습 (IV) 이동 (V) 자기결정 (VI) 자립생활능력 (VII) 경제적 자급자족 (V)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개별적으로 계획·조정·통합된 형태의 간학문적이고 포괄적인 특별서비스·개별화된 지원·기타원조를 필요로 한다. (B) 영·유아 서비스와 지원이 없으면 후에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이거나 상당한 발달지체를 보이

10) 엄현정, 한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5년 12월, 61면 참조.

는 출생에서 9세까지의 영·유아는 (A)의 (i)에서 (v)에 언급한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인으로 간주한다.

한편 2000년의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2000, DD Act)』에서는 보건복지부 내에 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D)에서 주 발달장애위원회에 재정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체계 변화, 옹호 및 능력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옹호 프로그램(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DD 프로그램) 활동을 시행할 체계(P&A 체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제휴 프로그램(university affiliated program)을 통하여 대학 연구조직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개인, 단체, 주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 미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법률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법제 역시 제1절 제A부 일반조항의 제15002조에 나타나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002조 (14) (주택관련 활동) “주택관련활동”은 발달장애인이 임대 및 소유관련 원조·아파트 및 주택개조 원조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주택·주택지원 및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권리옹호·역량구축·시스템변경활동을 말한다.¹¹⁾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개별화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15002조 (16)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B) (i) 발달장

11) 엄현정, 전개논문 63면 참조.

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ii)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예방한다. (iii)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C) (i) 초기개입서비스 (ii) 단기보호 (iii) 활동보조서비스 (iv) 가정지원서비스 (v) 지원고용서비스 (vi) 발달장애인을 고령보호자가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vii)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서비스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3. 일본의 지적장애인 관련 시스템 및 법률

(1) 일본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 및 시스템

일본의 경우 2005년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개정¹²⁾에 따라 2006년 3월 31일 지적장애인에 관한 법률¹²⁾을 제정하여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는 제1장 총칙 제4조에 나타나 있는바 그 내용은 “지역의 지적장애자의 복지에 관한 제 문제에 대해, 주로 거택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포함해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자 또는 지적장애자의 개호를 행하는 자로부터 상담요청에 따라”에 나타나 있다.

이는 한국 법률안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 무기한 지속되기 쉬운” 상태가 18세 이전에 나타나야 함을 규정한 것과 대응해 볼 때, 일본 법률의 정의인 “연령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규정”의 내용은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내용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는 제10조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제10조 시정촌(市町村)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또는 그 장은,

12)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정리자료』, 2008년 4월, 67면 참조.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주로 전조 제3항 각호에 기재한 업무 또는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市町村)의 장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시가 설치하는 복지사무소에 지적장애자 복지사를 두고 있는 복지사무소가 있을 때에는, 해당시의 지적장애자 복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복지사무소의 장은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지도에 관해서는 해당 시의 지적장애자 복지사의 기술적 원조 및 조언을 구해야 한다. 3. 시정촌(市町村)에 설치한 복지사무소 중에 지적장애인 복지사를 두고 있는 복지사무소의 장은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지도를 행함에 있어, 특히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장애자 갱생상담소의 기술적 원조 및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관련 법률안과 대조해 볼 때, 복지서비스의 실시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둔 점과 지적장애인 복지사를 통해 지적장애인 복지에 관한 상담 및 기술 지도를 행하도록 한 점에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일본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법률

일본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관한 법률로는 “지적장애인 주간 서비스센터, 지적장애인갱생시설, 지적장애인수산시설, 지적장애인통근기숙사 및 지적장애인 복지홈”에 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시설은 지적장애인들이 직업을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 그룹홈에 관한 시설은 “지적장애인 복지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

“제21조의 9 지적장애자복지 홈은, 저렴한 요금으로, 실제로 주거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자에 대해, 거실 등의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것

13)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개자료 88면 참조.

과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세칙을 조항으로 명문화한 내용은 보이지 않기에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과 비교분석을 하기에 내용상 한계점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 안에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범위로는 위에서 언급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분석의 틀 안에 일본의 법률을 넣지 않고, 제4절에서 일본 지적장애인을 위한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관련 개선방안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제 1 절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의 논리 및 측정항목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은 인과추론방식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사회체계들을 비교분석하는 모형으로 1970년 Przeworski와 Teune에 의해 개발된 이래 비교분석을 요구하는 각종 논문과 보고서에 사용되어져 왔다.¹⁴⁾ 특히 각국 간의 체제 및 법률을 비교하기 위한 질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에 관한 본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을 적용하기에 앞서 그 방법론에 대한 원리를 간략하나마 정리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각국 간 법률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형은 종속변수로 상정된 각종 현상이 각 비교사례에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때, 사례 간 유사성은 그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그 상이성만이 설명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비교사례를 통한 연구의 목적이 해당 사례의 특징을 규정짓는 요소간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맞춰져 있음을 상기할 때,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핵심내용을 사례연구방법의 주요사항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추구하는 진정성을 확보한 연구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체계상의 유사점은 극대화 시키고 그 차이점은 극소화시킴으로써 종속변인을 초래하는 설명변인들을 최대한 축소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체계 간 상이성을 설명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14) 김웅진 외(2003), 『비교지역 연구전략: 방법론적 성찰』, 서울: 인간사랑, 19면 참조.

인과추론방식은 <표-7>에서 도식화될 수 있다.

<표-7>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의 인과추론방식¹⁵⁾

잠정 독립변인 \ 종속변인	Y'	Y''	Y'''
X1	X1'	X1'	X1'
X2	X2'	X2''	X2'''
X3	X3'	X3'	X3'

- 종속변인 Y: 사례간 상이성 표출 ($Y' - Y'' - Y'''$)
- 잠정독립변인 X₁ (체계속성): 사례간 유사성 표출 ($X_1' - X_1'' - X_1'''$)
- 잠정독립변인 X₂ (체계속성): 사례간 상이성 표출 ($X_2' - X_2'' - X_2'''$)
- 잠정독립변인 X₃ (체계속성): 사례간 유사성 표출 ($X_3' - X_3'' - X_3'''$)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에서 잠정독립변인인 측정항목을 추려내는 작업은 비교분석의 수준과 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비교분석의 논리를 구축함에 있어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도출과정에서 Sartori(1970)는 ‘의식 있는 사색’을 LaPalombara(1970)는 ‘경험적 엄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잠정독립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관련 한국 법률안과 미국 법률을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부분에 있어 한국의 법률안과 미국법률의 유사체계 잠정독립변인으로는 ‘연령의 구분,

15) 김용진 외(2003), 전계서 20면 참조.

지적장애범위, 기능적 한계범위, 영·유아에의 적용범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부분에 있어 잠정독립변인으로 ‘자립생활지원, 그룹홈 이용,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에 관한 법률 및 법률안의 비교에 있어 비교대상국인 한국과 미국의 법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지적장애인의 권리,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잠정독립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끝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참고할 때 ‘운영위원회,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를 잠정독립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상의 잠정독립변인들을 사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안)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결정적 변인에 있어 차이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제 2 절 최대유사체계분석을 활용한 비교분석

1. 지적장애인 정의에 대한 법률(안) 비교

지적장애인 정의에 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① “지적장애인 등”이라 함은 18세 이전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지적장애인의 연령범위를 규정하는 “18세 이전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내용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규정하는 18세 미만인 자의 내용을 적용할 때 아동기간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적장애인 법률이 지적장애아동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이상 그 범위를 규정한 기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시된다. 곧, 지적장애인의 기준을 아동부분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뒷받침 할 국가재정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실례로 18세 전후로 정신적인 신체적인 또는 양쪽의 증상이 결합되어 지적장애가 무기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그 범위를 규정할 경우 불과 몇 개월 심지어는 몇 일차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을 입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 범위를 가능한 한 지적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전생애주기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장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치매와 같은 경우를 감안할 때 그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기에 그 범위의 규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령의 범위에 이어 기능적 범위에 있어 규정인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 있어 그 기능이 위에서 언급한 어느 한 가지만 해당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가령, 경제적 자족성만을 두고 기준으로 잡을 때 실제적으로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몇 가지 이상

의 기능적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그 같은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영·유아의 경우 적용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연령대에 따른 보다 세밀한 분류가 시급하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전체적인 법률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구체성과 적용 시 법률실천의 현실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할 때, 현 법률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 지적장애인에 대한 법률과 시스템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개선안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법률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령범위 및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¹⁶⁾

제1절 제A부 제15002조 (8) (A) (i)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중복손상이 원인이다. (ii)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난다. (iii)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vi)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영역 중 3가지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갖는다 (I) 자기관리 (II) 수용 및 표현언어 (III) 학습 (IV) 이동 (V) 자기결정 (VI) 자립생활능력 (VII) 경제적 자급자족. (v)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개별적으로 계획·조정·통합된 형태의 간학문적이고 포괄적인 특별서비스·개별화된 지원·기타원조를 필요로 한다. (8) (B) 영·유아 서비스와 지원이 없으면 후에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이거나 상당한 발달지체를 보이는 출생에서 9세까지의 영·유아는 (A)의 (i)에서 (v)에 언급한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인으로 간주한다.

16) 엄현정, 전계논문 56면 참조.

이상의 내용에서 지적장애인의 연령범위를 규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중복손상이 원인이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난다”는 내용은 한국의 18세 보다 4세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지적장애인의 범위가 보다 확장된 경우라 하겠다. 이 같은 내용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 범위를 전생애주기로 확장시킨 정도는 아니지만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될 만한 연한을 보다 넓게 적용한 사례로 의미가 있는 조치로 보인다.

기능적 범위에 있어 규정인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영역 중 3가지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갖는다. (I) 자기관리 (II) 수용 및 표현언어 (III) 학습 (IV) 이동 (V) 자기결정 (VI) 자립생활능력 (VII) 경제적 자급자족”¹⁷⁾에서는 지적장애의 기능적 제한을 “자기보호 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가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안과 달리 3가지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갖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실제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실효성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적용을 위해 “특정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이거나 상당한 발달지체를 보이는 출생에서 9세까지의 영·유아는 (A)의 (i)에서 (v)에 언급한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인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과 미국 법률을 그 내용에 바탕을 둔 잠정독립변인(지적장애인에 대한 연령의 구분, 지적장애범위, 기능적 한계범위, 영·유아에의 적용범위)에 따라 비교분석하면 다음의 <표-8>로 정리할 수 있다.

17) 엄현정, 전계논문 61면 참조.

<표-8> 지적장애인 정의에 대한 법률(안) 비교

종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연령의 구분	제 2 조 ① “지적장애인 등” 이라 함은 18세 이전에	제 1 절 제A부 제15002조 (8) (A) (ii)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난다.
지적장애범위	제 2 조 ①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 상이 결합되어 나타나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8) (A) (i) 정신적 또는 신 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신 체적 중복손상이 원인이다. (iii)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 능성이 있다.
기능적 한계범위	제 2 조 ①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 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 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 동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 나 종합적·일반적인 보 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 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A) (vi) 다음과 같은 주 요 생활 활동영역 중 3가지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한 계를 갖는다. (I) 자기관리 (I I) 수용 및 표현언어 (III) 학 습 (IV) 이동 (V) 자기결정 (VI) 자립생활능력 (VII) 경제 적 자급자족. (v) 장기간 또 는 평생에 걸쳐 개별적으로 계획·조정·통합된 형태의 간학문적이고 포괄적인 특별 서비스·개별화된 지원·기 타원조를 필요로 한다.
영·유아에의 적용범위		(8) (B) 영·유아 서비스와 지원이 없으면 후에 발달장 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이거나 상당한 발달지체를 보이는 출생에 서 9세까지의 영·유아는 (A)의 (i)에서 (v)에 언급한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 하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인 으로 간주한다.

종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	---------------------	--------------------------

<표-8>에서 나타난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과 미국 법률을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령의 구분, 지적장애범위, 기능적 한계범위, 영·유아에의 적용범위”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상이한 내용으로 구분되는 점은 논의의 전개상 제4장 제1절 “지적장애인 정의에 대한 법률초안 개선안”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2.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안) 비교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이중 제17조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한다”는 내용은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 복지지원 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룹홈 이용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한다”는 내용은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것이다.

제17조와 18조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제공 의무 및 이용관련 법률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19조의 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설정에 있어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란 내용으로 단순화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법률 내용의 보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적장애인의 요구에 기초한 수요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안 중 자립생활 지원은 “제1절 제A부 제15002조 (14) 발달장애인이 임대 및 소유관련 원조·아파트 및 주택개조 원조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주택·주택지원 및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지원”에 나타나 있다.¹⁸⁾ 그룹홈 이용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제1절 제A부 제15001조 (c)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은 거주지 선택을 포함하여 그들이 받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주된 의사결정자로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를 들 수 있다.¹⁹⁾ 이상의 내용은 한국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룹홈 이용 관련 법률안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그 구체적 실천방안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엄현정, 전계논문 63면 참조.

19) 엄현정, 전계논문 59면 참조.

“(16) (A)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B) (i)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ii)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예방 한다 (iii)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C) (i) 초기개입서비스 (ii) 단기보호 (iii) 활동보조서비스 (iv) 가정지원서비스 (v) 지원고용서비스 (vi) 발달장애인을 고령보호자가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vii)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서비스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전술한 바 한국의 법률안이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시에 대해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란 내용으로 단순화”한 것에 비해, 미국의 경우 “(i) 초기개입서비스 (ii) 단기보호 (iii) 활동보조서비스 (iv) 가정지원서비스 (v) 지원고용서비스 (vi) 발달장애인을 고령보호자가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vii)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서비스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적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놓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과 미국 법률을 그 내용에 바탕을 둔 잠정독립변인(자립생활 지원, 그룹홈 이용,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에 따라 비교분석하면 다음의 <표-9>로 정리할 수 있다.

<표-9>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안) 비교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	---------------------	--------------------------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자립생활 지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절 제A부 제15002조 (14) 발달장애인이 임대 및 소유 관련 원조·아파트 및 주택 개조 원조를 포함한, 지역사회 주택·주택지원 및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지원
그룹홈 이용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절 제A부 제15001조 (c)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은 거주지 선택을 포함하여 그들이 받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주된 의사결정자로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A) 발달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B) (i)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ii)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예방 한다. (iii)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C) (i) 초기개입 서비스 (ii) 단기보호 (iii) 활동보조서비스 (iv) 가정지원서비스 (v) 지원고용서비스 (vi)

종속변인 ↙ 감정 ↘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발달장애인을 고령보호자가 돌 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vii)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서비스를 단계적이 고 통합적으로 제공 한다.

<표-9>에서 나타난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과 미국 법률을 “자립 생활 지원, 그룹홈 이용,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상이한 내용으로 구분되는 점은 논의의 전개상 제4 장 제2절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3.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에 관한 법률(안) 비교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안을 제외한 기타 법률안으로 제3조 지적장애인의 권리, 제7조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제8조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들 수 있는데, 우선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 ①지적장애인 등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지적장애인 등은 적절한 치료, 복지서비스, 재활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들 권리 등을 가진다. ④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⑤지적장애인 등은 학대 또는 방

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상의 내용은 지적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며 사회적 활동에 제약받지 않을 권리를 다루고 있다.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법안의 현실 적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령,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차별과 인권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내용으로 어떠한 사항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제7조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①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복지에 관련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각 시·도에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2. 지적장애인 등의 능력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적장애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거주 및 직업재활·고용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및 그에 필요한 관련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6. 지적장애인 상담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적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그 내용이다.

이 같은 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구성과 운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

적장애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위원장을 포함하여 정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지적장애인지원위원장은 최소한 매 분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위 제8조의 내용은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임에도 그 구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있지 않다. 이는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국 지적장애인을 위한 기타 법률안을 미국의 법률과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의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009조 (a) 일반의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관하여 아래의 조사결과를 확인한다. (1) 발달장애인은 제15001조 (c)항에 따라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서비스·재활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서비스·재활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연방정부와 각 주는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 주거, 교육, 기타 지역사회프로그램에 한하여 공적자금을 제공함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A)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치료, 서비스, 재활훈련을 제공한다. (B) 다음과 같은 최소기준을 만족시킨다. (i)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발달장애인의 보호 (ii)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및 치과서비스 제공 (iii) 발달장애인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의 긴급한 신체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응으로서 그러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iv) 발달장애인에 대한 약물의 과도한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응으로서 또는 그들을 위한 서비스, 치료, 재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약물의 사용금지 (v) 발달장애인의 근친 또는 후견인이 사전공지 없이 해당 장애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 (4) 발달장애인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A) 서비스 수혜자에게 최대의 성과가 보장되도록 설계한다. (B) (i) 포괄적 건강관련서비스, 사회적응서비스, 원조기술서비스, 재활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거 프로그램의 경우, 시설의 크기와 프로그램기관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고려하여, 1988년 6월 3일에 장관이 규칙으로 공포한 정신 지체인을 위한 중간보호시설 적용기준을 따른다. (ii)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른 주거 프로그램들의 경우,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I)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는 수혜자의 욕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II) 그러한 시설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III) 그러한 시설 프로그램은 위생적이며, 시설거주자들을 인도적으로 보살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iii) 비주거 프로그램의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보호가 프로그램의 수혜자에게 적합하여야 한다. (b) 권리의 명확화위의 (a)에서 확인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헌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리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의 내용이 이에 해당 된다.²⁰⁾

이상은 한국의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비교할 때 매우 구체화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연방정부와 각 주는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 주거, 교육, 기타 지역사회프로그램에 한하여 공적 자금을 제공함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치료, 서비스, 재활훈련을 제공한다. (B) 다음과 같은 최소기준을 만족시킨다. (i)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발달장애인의 보호 (ii)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및 치료 서비스 제공 (iii) 발달장애인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의 긴급한 신체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용으로서 그러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iv) 발달장애인에 대한 약물의 과도한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용으로서 또는 그들을 위한 서비스, 치료, 재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약물의 사용금지 (v) 발달장애인의 근친 또는 후견인이 사전공지 없이 해당 장애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의 법률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와 관련하여 미국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

“제15025조 주 발달장애협의회와주 지정기관 (a) 일반 이 부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는 각 주는 이부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소비자 및 가정 중심적·소비자 및 가정 지향적·포괄적 및 통합적인 지역사회

20) 엄현정, 전계논문 71면 참조.

서비스·개별화된 지원·기타 원조시스템에 기여하는 권리옹호·역량 구축·시스템변경활동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설치·유지한다.”

위 법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안에는 그 책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바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c) 협의회는 책무 (1) 일반협회의 협의회 회원, 직원, 고문, 대리양수인을 통하여 아래의 (2)호에서 (10)호에 기술된 책무를 수행한다. (2) 권리옹호·역량구축·시스템변경활동 협의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옹호자로서 봉사하며, 이부의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 또는 지원한다. (3) 목표의 검토 보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각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A) 해당연도에 달성된 협의회 목표 (B) 미달성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저해한 요인들 (C) 제15024조에 따른 전략적 주 5개년계획의 수정 필요성 (D) 제15024조 (c)항 (4)호 (A)(ii)에 언급된 자기 권리 주장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검토 (E) 협의회 활동지원 또는 실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4) 주 계획 개발 협의회는 주 계획을 개발하고, 주 계획에 의거하여 주 지정기관과 협의한 후 장관에게 주 계획안을 제출한다. 주 지정기관과의 협의는 주 보증의 획득 및 주 계획과 주법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한한다. (5) 주 계획 시행 (A) 협의회는 아래의 (B)에서 (L)에 기술된 바와 같은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을 지원·실시함으로써 주 계획을 시행한다. (B) 아웃리치 협의회는 원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확인하고, 그들이 포괄적인 지역사회특별적응서비스 또는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웃리치활동을 지원·실시한다”²¹⁾의 내용이 한국의 현실에 맞

게 수정 및 고려되어야 할 조항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과 미국 법률을 그 내용에 바탕을 둔 잠정독립변인(지적장애인의 권리, 지적장애인 지원 위원회,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비교분석하면 다음의 <표-10>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10>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에 관한 법률(안)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의 권리	제 3 조 ①지적장애인 등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지적장애인 등은 적절한 치료, 복지서비스, 재활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둘 권리 등을 가진다. ④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	제15009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a) 일반 의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관하여 아래의 조사결과를 확인한다. (1) 발달장애인은 제15001조 (c)항에 따라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서비스·재활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서비스·재활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제한하지 않

21) 엄현정, 전계논문 81면 참조.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의 권리	니할 권리를 가진다. ⑤ 지적장애인 등은 학대 또는 방임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 연방정부와 각 주는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 주거, 교육, 기타 지역사회프로그램에 한하여 공적자금을 제공함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A)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치료, 서비스, 재활 훈련을 제공한다. (B) 다음과 같은 최소기준을 만족시킨다. (i)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발달장애인의 보호 (ii)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및 치과서비스 제공 (iii) 발달장애인 자신이나 주위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의 권리		사람들의 긴급한 신체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응으로서 그러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iv) 발달장애인에 대한 약물의 과도한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응으로서 또는 그들을 위한 서비스, 치료, 재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약물의 사용금지 (v) 발달장애인의 근친 또는 후견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의 권리		<p>인이 사전공지 없이 해당 장애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p> <p>(4) 발달장애인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p> <p>(A) 서비스 수혜자에게 최대의 성과가 보장되도록 설계한다.</p> <p>(B) (i) 포괄적 건강 관련서비스, 사회 적응서비스, 원조 기술서비스, 재활 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거 프로그램의 경우, 시설의 크기와 프로그램기관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고려하여, 1988년 6월 3일에 장관이 규칙으로 공포한 정신 지체인을 위한 중간 보호시설 적용기준을 따른다.</p> <p>(ii) 발달장애인을</p>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의 권리		<p> 위한 다른 주 거 프로그램들 의 경우, 다음 사항을 보증한 다. (I)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 한 보호는 수 혜자의 욕구에 적합하여야 한 다. (II) 그러한 시설 프로그램 의 수혜자는 그 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욕구가 충족될 수 있 어야 한다. (III) 그러한 시설 프 로그램은 위생 적이며, 시설거 주자들을 인도 적으로 보살피 고, 그들의 권 리를 보호하여 야 한다. </p> <p> (iii) 비주거 프 로그램의 경우, 그러한 프로그 램이 제공하는 보호가 프로그 램의 수혜자에 게 적합하여야 </p>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한다. (b) 권리의 명확화 위의 (a)에서 확인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헌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리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	제 7 조 ①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복지에 관련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각 시·도에 지적 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 옹호에 관한 사항 2. 지적장애인 등의 능력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적장애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거주 및 직업재활·고용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제15025조 주 발달장애협회의와주 지정기관 (a) 일반 이 부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는 각 주는 이부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소비자 및 가정 중심적·소비자 및 가정 지향적·포괄적 및 통합적인 지역사회서비스·개별화된 지원·기타 원조시스템에 기여하는 권리 옹호·역량구축·시스템변경활동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설치·유지한다.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조사 및 그에 필요한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6. 지적장애인상담원의 연 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적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8 조 ①지적장애인지원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위원장을 포 함하여 정하되, 지적장 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 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 는 자들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②지적장 애인지원위원장은 최소 한 매분기 2회 이상 회 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적장애인지원위원 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5025조 (b) 협의회회 회원자격 (1) 협의회 임명 (A) 일반 주지사는 해당 주 의 주민들 중에서 협의회회 회원을 임 명한다. (B) 추천 주지사는 발달장애 인을 대표하는 단 체들과 발달장애인 관련자들로부터 추 천을 받아 협의회 의 회원 및 비주거 관 회원을 재량으 로 선발한다. 협회 의회는 주지사의 요 청으로 주지사에게 모든 추천에 관한 협의회 및 공적정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보를 종합 제공할 수 있다. (C) 대표성 협회회의 회원은 지리적으로 주를 대표하고, 인종적·민족적 배경과 관련하여 주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3) 발달장애인의 대표 협회회의 회원 중 60% 이상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A) (i) 발달장애인 (ii) 발달장애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 (iii)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성인발달장애인의 근친 또는 후견인 (B) 이 부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받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기관의 피고용인이 아닌 사람이거나, 이 부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받거나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또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다른 기관 의 피고용인을 관 리하지 않는 사람 (c) 협의회회 의 책무 (1) 일반 협의회회 의 협의회 회 원, 직원, 고문, 대리 양수인을 통하여 아 래의 (2)호에서 (10) 호에 기술된 책무를 수행한다. (2) 권리옹호·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 협의회회 는 발달장애인 을 위한 옹호자로서 봉사하며, 이부의 목 적을 수행하는 프로그 램,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 또는 지원한다. (3) 목표의 검토 보조금 지급기간이 종 료되는 시점에, 각 협 의회회 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A) 해당연도에 달성 된 협의회회 의 목표 (B) 미달성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저해 한 요인들 (C) 제15024조에 따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p>른 전략적 주 5개 년계획의 수정 필 요성</p> <p>(D) 제15024조 (c)항 (4)호 (A)(ii)에 언 급된 자기권리주장 의 목표에 대한 정 보를 별도로 검토</p> <p>(E) 협회회의 활동지 원 또는 실시에 대 한 소비자 만족도</p> <p>(4) 주 계획 개발 협회회는 주 계획을 개발하고, 주 계획에 의거하여 주 지정기 관과 협의한 후 장관 에게 주 계획안을 제 출한다. 주 지정기관 과의 협의는 주 보증 의 획득 및 주 계획 과 주법과의 일관성 을 확인하기 위한 목 적에 한한다.</p> <p>(5) 주 계획 시행 (A) 협회회는 아래의 (B)에서 (L)에 기 술된 바와 같은 권리옹호, 역량구 축, 시스템변경활 동을 지원·실시함 으로서 주 계획을</p>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행한다. (B) 아웃리치 협의회는 원조의 손 길이 미치지 못하 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확인하고, 그 들이 포괄적인 지 역사회특별적용서 비스 또는 전문서 비스를 포함한 지 역사회서비스, 개 별화된 지원, 기타 원조를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 한 아웃리치활동을 지원·실시한다. (C) 훈련 협의회는 발달장애 인, 가족, 종사자들 (전문가, 전문직 보 조원, 학생, 자원봉 사자, 지역주민)에 대 한 훈련을 지원· 실시함으로써, 그들 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위한 포괄 적인 지역사회특별 적용서비스 또는 전 문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p>타원조에 접근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지원 또는 실시되는 협회회의 훈련활동은 이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한다.</p> <p>(D) 기술원조 협의회는 이부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술 원조 활동을 지원·실시한다.</p> <p>(E) 지역사회 지원 및 교육 협의회는 이웃과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실시한다.</p> <p>(i)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제공하는 현지 네트워크의 촉진</p> <p>(ii) 교육</p> <p>(iii) 이웃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받</p>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달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서비 스, 자원, 기회 를 직접 제공하 도록 함 (F) 기관간 협력 및 조정 협의회는 발 달장애인과 그 가 정에 대한 더욱 향 상된 봉사, 지원, 원조, 권리옹호를 위하여, 기관간 협 력 및 조정을 촉진 하는 활동을 지 원·실시한다. (G) 관련 협의회, 위 원회, 프로그램과 의 조율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 들과 서비스의 조 율을 강화하기 위 한 활동을 지원· 실시한다. (i) 연방 또는 주법에 의거 하여 인가된 다른 장애인관련 협의 회·기관·위원회 (ii) 장애인 교육법 제D부에 의거한 부 모교육 및 정보센 터, 연방의 지원을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받아 장애아의 부 모를 원조하는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 (iii) 장애인을 원조하 는 권리옹호, 역량 구축, 시스템변경 활동에 관여하는 다른 단체들 (H) 장벽제거·시스템 설계 및 재설계 협 의회는 발달장애인 이 지역사회서비 스에 접근하여 이 를 이용하는데 장 벽이 되는 요인들 을 제거하고, 시스 템 설계 및 재설 계를 강화하며, 주 계획에 확인된 쟁 점에 대처하기 위 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실시한다. (I) 연합개발 및 시민 참여 협의회는 지 역주민에게 발달장 애인과 그 가정의 능력·선호·욕구 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고, 자기 권리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장 훈련·정책입 안자 교육·시민 리 더십 기술을 포함 한 협의회의 정책 의제를 지원하는 연 합을 개발·원조하 는 훈련을 지원· 실시한다. (J) 정책입안자들에게 정보제공 협의회는 조사 분석의 지원 및 실시, 정보수집, 정책모델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정 책입안자들에 대한 정보제공활동을 지 원·실시한다. 기회 를 제공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능력강 화와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욕구충 족을 위한 포괄적 인 서비스의 증진· 수정 및 전문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협의회는 연방 행 정부·의회·주지 사·주 의회·주 기 관 등의 연방·주· 현지의 정책입안자 들에게 정보를 직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접 제공할 수 있다.

<표-10>에서 나타난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과 미국 법률을 “지적장애인의 권리,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상이한 내용으로 구분되는 점은 논의의 전개상 제4장 제3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4.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법률(안) 비교

위에서 언급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기타 법률안인 “지적장애인의 권리,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으로는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지적장애인연구센터의 설치, 제12조 실태조사와 연차 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①복지센터는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지적장애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의 현황 및 복지실태에 관련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주요 복지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 중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인 제10조에서는 10인 이내의 위원의 구성과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반 이상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들을 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3분의 2이상의 관계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지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연구센터설치 관련 법률인 제11조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지적장애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한 세부조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법률안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와 관련된 법률인 제12조는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의 현황 및 복지실태에 관련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들의 주요 복지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법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어떤 내용을 실질적인 조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작업은 앞으로의 법률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기타 법률안 중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044조 운영 (a) 운영위원회 제15043조에 언급된 시스템이 운영위원회가 있는 민간 비영리기관 또는 운영위원회가 있는 공적시스템으로 조직된 주의 경우, 그 운영위원회는 시스템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단, (1) (A) 운영위원회는 이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그들의 욕구에 정통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B) 위원회의 다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받아야하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ii) 위의 (i)에 언급한 사람의 부모, 가족, 후견인, 옹호자, 인가된 대리인 (C) 위원회에는 주 발달장애협의회, 주의 센터, 자기권리 주장협회의 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 (2) 주지사가 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질 경우, 해당 주의 주지사는 운영위원회 1/3 이하를 지명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교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임기제한 규정을 따른다. (4) 위원회의 결원은 결원발생 후 60일 이내에 보선된다. (5) 시스템이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없는 공적시스템으로 조직되어있는 주의 경우, 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자문회의를 설치한다. (A)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옹호를 위한 정책과 우선사항을 시스템에 조언한다. (B) 회원의 다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받아야하는 발달장애인

(ii) 위의 (i)에 언급된 사람의 부모, 가족, 후견인, 옹호자, 인가된 대리인”²²⁾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 중 운영위원회가 지적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들로 얼마나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규정은 “주지사가 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질 경우, 해당 주의 주지사는 운영위원회 1/3 이하를 지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나타나있다. 즉,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은 지적장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의 2분의 1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법률안도 그 기준선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높일 경우,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수요자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설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5063조 목적과 활동범위 (a) 전국 대학 발달장애 교육, 연구, 서비스 센터망 (1) 일반 발달장애인에게 리더십을 제공하고, 연방·주·지역사회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발달장애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관은 각 주의 센터로 지정된 적격기관에게 센터관리 및 운영비용 중 연방부분을 지불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센터는 대학의 간학문적인 교육, 연구, 공공서비스기관이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중점분야에 직간접적으로 대처하는 핵심기능에 종사하는 대학과 제휴한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2) 핵심기능 위의 (1)호에 언급된 핵심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이 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조사 및 지속적인 리더십교육, 직접서비스교육, 임상교육, 직원교육을 포함한 간학문적인 서비스 사전조사 및 학생과 특별연구

22) 엄현정, 전계논문 98면 참조.

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B)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i)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전문직 보조원, 정책입안자,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ii) 시범 및 활동모델을 통하여 (i)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서비스, 지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C)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평가, 공공정책분석 등을 실시한다. (D) 이 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실시된 활동관련 정보를 보급한다. 특히 이 부에 의거하여 인가된 센터망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내포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자원임을 입증하는 정보를 보급 시킨다”²³⁾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중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연구센터설치 관련 법률안 내용의 한계로 지적된 “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한 세부조항으로 “(A) 이 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조사 및 지속적인 리더십교육, 직접서비스교육, 임상교육, 직원교육을 포함한 간학문적인 서비스 사전조사 및 학생과 특별연구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B)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i)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전문직 보조원, 정책입안자,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ii) 시범 및 활동모델을 통하여 (i)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서비스, 지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C)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평가, 공공정책분석 등을 실시한다. (D) 이 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실시된 활동관련 정보를 보급한다. 특히 이 부에 의거하여 인가된 센터망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내포한 국가적이고 국제적

23) 엄현정, 전계논문 102면 참조.

인 자원임을 입증하는 정보를 보급 시킨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연구센터의 기능에 관한 법률안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004조 장관의 책무 (a)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3) 진보지표 (A) 일반 위의 (1)호에 언급된 기관이 중점분야에서 이룩한 진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관은 발달장애국의 국장 및 기관들과 협의하여 각 중점 분야에 대한 지표를 개발한다. (D) 명확한 측정 진보지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i) 이 절의 제B, C, D부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만족도 (ii) 이절의 제B, C, D부를 통하여 제공된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이 발달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선하였는지의 정도 (I) 이용하는 서비스, 지원, 원조의 종류, 강도, 시기를 선택 및 통제 (II)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 모든 활동에 참여 (III)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 없는, 그리고 부당하게 감금 또는 격리되지 않는 서비스, 지원, 원조에 접근 제15005조 장관의 보고 장관은 적어도 2년에 한번,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와 이 절의 제B, C, D부에 의거하여 입수된 정보를 이용하여, 대통령·의회·국가장애협의회에게 지원된 프로그램의 목표와 성과를 기술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이 절의 제B, C, D, E부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받은 각 협의회, 보호 및 옹호시스템, 센터, 기관들이 다음과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예를 제시한다. (A) 상호간의 활동조정 (B)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이 자기결정, 자립, 생산성, 지역사회에의 완전통합을 촉진하는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원조의 설계에 참여하고 이에 접

근하는 능력의 강화 (C) 전통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미흡한 사람, 특히 인종적, 민족적으로 소소집단의 사람들과 지리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권익을 위한 권리옹호, 역량구축, 정책개혁을 포함한 시스템 변경활동 및 기타활동 (D) 발달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 변경활동 (2) 이 절에 의거하여 인가된 프로그램이 다음 사항에 대처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발달장애인을 보호함 (B) 발달장애인의 사망과 중상에 관한보고 (3) 이 절에 의거하여 인가된 프로그램이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과 규제준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개괄 한다”²⁴⁾의 내용이 그것이다.

위의 내용 중 조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은 “(D) 명확한 측정 진보지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i) 이 절의 제B, C, D부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만족도 (ii) 이절의 제B, C, D부를 통하여 제공된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이 발달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선하였는지의 정도 (I) 이용하는 서비스, 지원, 원조의 종류, 강도, 시기를 선택 및 통제 (II)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 모든 활동에 참여 (III)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 없는, 그리고 부당하게 감금 또는 격리되지 않는 서비스, 지원, 원조에 접근”에 나타나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법률안의 개선에 참조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과 미국 법률을 그 내용에 바탕을 둔 잠정독립변인(운영위원회,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24) 엄현정, 전계논문 67면 참조.

중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운영위원회		가된 대리인 (C) 위원회에는 주 발달장애협의회, 주의 센터, 자기 권리 주장협회의 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 (2) 주지사가 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질 경우, 해당 주의 주지사는 운영위원회 1/3 이하를 지명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교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임기제한 규정을 따른다. (4) 위원회의 결원은 결원 발생 후 60일 이내에 보선된다. (5) 시스템이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없는 공적 시스템으로 조직되어있는 주의 경우, 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자문회의를 설치한다. (A)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옹호를 위한 정책과 우선사항을 시스템에 조언한다. (B) 회원의 다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시스템을 통하여

중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받아 야하는 발달장애인 (ii) 위의 (i)에 언급된 사람의 부모, 가족, 후견인, 옹호자, 인 가된 대리인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제11조 ①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지적장애 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체 계적인 연구를 위하 여 지적장애인연구센 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연 구센터를 설치하는 경 우에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그에 관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③연구센터 설치 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063조 목적과 활동범위 (a) 전국 대학 발달장애 교 육, 연구, 서비스 센터망 (1) 일반 발달장애인에게 리더십 을 제공하고, 연방·주· 지역사회의 정책입안자들 에게 발달장애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발달장애인 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 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 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 전 통합할 수 있는 기회 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 관은 각 주의 센터로 지 정된 적격기관에게 센터 관리 및 운영비용 중 연 방부분을 지불하기 위하 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센터는 대학의 간학문적 인 교육, 연구, 공공서비 스기관이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중점분야에 직간 접적으로 대처하는 핵심

종속변인 / 참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기능에 종사하는 대학과 제휴한 공공 또는 비영 리기관이어야 한다. (2) 핵심기능 위의 (1)호에 언급된 핵 심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이 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와 지역사회 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조사 및 지속적인 리더십교육, 직접서비 스교육, 임상교육, 직 원교육을 포함한 간학 문적인 서비스 사전조 사 및 학생과 특별연 구원들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을 제공한다. (B) 다음과 같은 지역사 회서비스를 제공한다. (i)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전문직 보 조원, 정책입안자, 학 생, 지역주민들에게 훈련 및 기술지원 을 제공한다. (ii) 시범 및 활동모델 을 통하여 (i)에 언 급된 사람들에게 서 비스, 지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C) 발달장애인과 그 가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중속변인 / 참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평가, 공공정책 분석 등을 실시한다. (D) 이 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실시된 활동관련 정보를 보급한다. 특히 이 부에 의거하여 인가된 센터망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내포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자원임을 입증하는 정보를 보급시킨다.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제12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의 현황 및 복지 실태에 관련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주요 복지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	제15004조 장관의 책무 (a)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3) 진보지표 (A) 일반 위의 (1)호에 언급된 기관이 중점분야에서 이룩한 진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관은 발달장애국의 국장 및 기관들과 협의하여 각 중점분야에 대한 지표를 개발한다. (D) 명확한 측정 진보지표는 최소한 다

종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출하여야 한다.	음의 사항을 기술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i) 이 절의 제B, C, D부에 의거하여 제 공되는 권리옹호, 역 량구축, 시스템변경 활동에 대한 발달 장애인의 만족도 (ii) 이절의 제B, C, D 부를 통하여 제공 된 권리옹호, 역량 구축, 시스템변경활 동이 발달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능력 을 개선하였는지의 정도 (I) 이용하는 서비 스, 지원, 원조의 종류, 강도, 시기 를 선택 및 통제 (II)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지 역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 (III) 학대, 무시, 경 제적 및 성적착 취, 법적 및 인 권침해 없는, 그 리고 부당하게 감금 또는 격리 되지 않는 서비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종속변인 / 참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스, 지원, 원조 에 접근 제15005조 장관의 보고 장관은 적어도 2년에 한번,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와 이 절의 제B, C, D부에 의거하 여 입수된 정보를 이용하여, 대통령 · 의회 · 국가장애협 회에게 지원된 프로그램의 목표와 성과를 기술한 다음 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이 절의 제B, C, D, E 부에 의거하여 자금지원 을 받은 각 협의회, 보 호 및 옹호시스템, 센터, 기관들이 다음과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예를 제 시한다. (A) 상호간의 활동조정 (B) 발달장애인과 그 가 정이 자기결정, 자립, 생산성, 지역사회에의 완전통합을 촉진하는 필요한 지역사회서비 스, 개별화된 지원, 기 타원조의 설계에 참여 하고 이에 접근하는 능력의 강화 (C) 전통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종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미흡한 사람, 특히 인 종적, 민족적으로 소 소집단의 사람들과 지 리적으로 지원이 미흡 한 지역에 사는 사람 들을 포함하여, 발달 장애인과 그 가정의 권익을 위한 권리옹 호, 역량구축, 정책개 혁을 포함한 시스템 변경활동 및 기타활동 (D) 발달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에게 영향을 끼 치는 권리옹호, 역량구 축, 시스템 변경활동 (2) 이 절에 의거하여 인가 된 프로그램이 다음 사 향에 대처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 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발달 장애인을 보호함 (B) 발달장애인의 사망과 중상에 관한보고 (3) 이 절에 의거하여 인가 된 프로그램이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과 규제준수를 위하

제 3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법』 비교분석

종속변인 / 참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의 법률
		여 취한 조치들을 개괄 한다.

<표-11>에서 나타난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과 미국 법률을 “운영위원회,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상이한 내용으로 구분되는 점은 논의의 전개상 제4장 제4절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관련 법률 초안 개선안”부분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 4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초안」 개선방안

제 1 절 지적장애인 정의에 대한 법률초안 개선안

지적장애인 정의에 대한 법률안에서 지적장애 발생의 연령범위를 규정하는 “18세 이전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내용은 미국법률의 경우 지적장애 발생의 연령범위가 ‘22세 이전’으로 규정된 내용과 대조된다. 지적장애의 발생기간을 한국의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규정하는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할 때, 18세 직후로 정신적인 신체적인 또는 양쪽의 증상이 결합되어 지적장애가 무기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을 입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전생애주기에 걸쳐 그 대상을 포함시킬 경우 중장년기의 치매증상을 겪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와 그 적용범위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 연령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예. 청소년 연령기준인 ‘19세 미만’인 자로 연령범위를 채택할 때 1년 확장 가능). 한국의 경우 그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지적장애인과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령의 범위에 이어 기능적 범위에 있어 규정인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 있어 그 기능이 어느

한 가지만 해당해도 되는 한국의 법률안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법률은 “자기관리,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 자기결정, 자립생활능력, 경제적 자급자족”에서 3가지 이상 상당한 기능적 장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 한국의 법률안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어느 한 부분만 기능적 장애가 나타난 자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예. 경제적 자족성만을 두고 기준으로 잡을 때 실제로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미국과 같이 몇 가지 이상에서 기능적 장애가 나타나야 지적장애인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역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및 보호자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된 내용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유아의 경우 그 특수성이 인정되기에 미국에서 법률로 정한 “서비스와 지원이 없으면 후에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이거나 상당한 발달지체를 보이는 출생에서 9세까지의 영·유아는 (A)의 (i)에서 (v)에 언급한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인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을 참고로 세부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한국의 경우 영·유아의 연령기준을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영·유아의 경우, 서비스와 지원이 없으면 후에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이거나 상당한 발달지체를 보이는 출생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 간주 한다”는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 법률초안 개선안

종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연령의 구분	제 2 조 ① “지적장애인 등”이라 함은 18세 이전에	제 2 조 ① “지적장애인 등”이라 함은 <u>19세 이전(청소년 연령기준)</u> 에
지적장애범위	제 2 조 ①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기능적 한계범위	제 2 조 ①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가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조 ①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가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u>3가지 이상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u>
영·유아에의 적용범위		제 2 조 ② <u>영·유아의 경우, 서비스와 지원이 없으면 후에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상태이거나 상당한 발달지체를 보이</u>

종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는 출생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 하지 않더라도 지적장애인 으로 간주한다.

제 2 절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17조와 18조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내용은 제19조의 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란 내용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미국의 법률에는 “(16) (A)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B) (i)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ii)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예방 한다 (iii)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C) (i) 초기개입서비스 (ii) 단기보호 (iii) 활동보조서비스 (iv) 가정지원서비스 (v) 지원고용서비스 (vi) 발달장애인을 고령보호자가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vii)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서비스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한국의 법률안에도 그 세부적인 조항의 규정이 요구된다.

제 2 절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가령,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와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이어 제19조는 관련 복지서비스 실시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관련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②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예방한다. ③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④ 초기개입서비스, 단기보호, 활동보조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발달장애인을 고령보호자가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 서비스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3>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Group-Home)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종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자립생활 지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초안』 개선방안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그룹홈 이용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u>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u> ① <u>관련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u> ② <u>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예방한다.</u> ③ <u>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u> ④ <u>초기개입서비스, 단기보호, 활동보조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발달장애인</u>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을 <u>고령보호자가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서비스를 단 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 공한다.</u>

제 3 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초안으로 제3조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들 수 있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차별과 인권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내용으로 어떠한 사항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미국의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범위와 그 금지방안은 “(i)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발달장애인의 보호 (ii)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및 치과서비스 제공 (iii) 발달장애인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의 긴급한 신체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용으로서 그러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iv) 발달장애인에 대한 약물의 과도한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용으로서 또는 그들을 위한 서비스, 치료, 재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약물의 사용금지 (v) 발달장애인의 근친 또는 후견인이 사전공지 없이 해당 장애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에서 구체화 되었다.

다음으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미국의 법률내용으로 “(A) 서비스 수혜자에게 최대의 성과가 보장되도록 설계한다. (B) (i) 포괄적 건강관련서비스, 사회적응서비스, 원조기술서비스, 재활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거 프로그램의 경우, 시설의 크기와 프로그램기관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고려하여, 1988년 6월 3일에 장관이 규칙으로 공포한 정신 지체인을 위한 중간보호시설 적용기준을 따른다. (ii)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른 주거 프로그램들의 경우,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I)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는 수혜자의 욕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II) 그러한 시설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III) 그러한 시설 프로그램은 위생적이며, 시설거주자들을 인도적으로 보살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iii) 비주거 프로그램의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보호가 프로그램의 수혜자에게 적합하여야 한다. (b) 권리의 명확화위의 (a)에서 확인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헌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리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제7조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와 제8조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률에서는 제8조가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그 구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어떤 책무가 있는지에 대해 미국의 법률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책무 (1) 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옹호자로서 봉사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 또는 지원한

다. (2) 보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해당연도에 달성된 위원회의 목표 ② 미달성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저해한 요인들 ③ 협의회의 활동지원 또는 실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3) 위원회는 원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정을 확인하고, 그들이 포괄적인 지역사회특별적응서비스 또는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실시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지적장애인의 권리	제 3 조 ①지적장애인 등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지적장애인 등은 적절한 치료, 복지서비스, 재활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둘 권리 등을 가진다. ④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⑤	제 3 조 <u>지적장애인은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기에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u> ① <u>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및 치과서비스 제공</u> ② 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둘 권리 등을 가진다. ③ 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④ 지적장애인 자신이나

제 4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초안』 개선방안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지적장애인 등은 학대 또는 방임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위사람들의 긴급한 신체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u>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u> , 또한 <u>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응으로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u> ⑤ 지적장애인에 대한 <u>약물의 과도한 사용금지</u> , 또한 <u>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응으로서 또는 그들을 위한 서비스, 치료, 재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약물의 사용금지</u> ⑥ 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지적장애인의 <u>근친 또는 후견인이 사전공지 없이 해당 장애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u>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	제 7 조 ①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복지에 관련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각 시·도에 지적 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제 3 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초안 개선안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2. 지적장애인 등의 능력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적장애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거주 및 직업재활·고용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및 그에 필요한 관련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6. 지적장애인상담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적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8 조 ①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위원장을 포함하여 정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적장애인지원위원장은 최소한 매분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제 8 조 (1)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옹호자로서 봉사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 또는 지원한다. (2) 보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해당 연도에 달성된 위원회의 목표 ② 미달성된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u>목표 및 목표달성을 저해한 요인들</u> ③ <u>협의회의 활동지원 또는 실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u> (3) <u>위원회는 원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정을 확인하고, 그들이 포괄적인 지역사회특별적응서비스 또는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실시한다.</u>

제 4 절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법률초안 개선안

제10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안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반 이상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대한 법률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적장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법률안도 “그 기준선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높일 경우,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

고 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수요자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에 수정이 요구된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연구센터설치 관련 법률안인 제11조는 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한 세부조항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미국의 관련 법률내용을 바탕으로 그 기능에 관한 다음의 조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센터 기능) ①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조사 및 지속적인 리더십교육, 직접서비스교육, 임상교육, 직원교육을 포함한 간학문적인 서비스 사전조사 및 학생과 특별연구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②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전문직 보조원, 정책입안자,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③ 시범 및 활동모델을 통하여 ②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서비스, 지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평가, 공공정책분석 등을 실시한다. ⑤ 실시된 활동관련 정보가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자원임을 입증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와 관련된 법률인 제12조는 조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법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 중, 조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그 개선안을 마련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의 내용) 명확한 측정 진보지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에 관한 제반적인 만족도 (2) 지적장애인을 위한 제반서비스가 지적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선하였는지의 정도 ① 이용하는 서비스, 지원, 원조의 종류, 강도, 시기를 선택 및 통제 ②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 ③ 학대, 무

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 없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감금 또는 격리되지 않았는지,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원조에 접근 편의성.”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5>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법률초안 개선안

종속변인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운영위원회	제10조 ①복지센터는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①복지센터는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u>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u>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제11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지적장애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	제11조 ① <u>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조사 및 지속적인 리더십교육, 직접서비스교육, 임상교육, 직원교육을 포함한 간학문적인 서비스 사전조사 및 학</u>

제 4 절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법률초안 개선안

종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p> 치할 수 있다. ②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	<p> 생과 특별연구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②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전문직 보조원, 정책입안자,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③ 시범 및 활동모델을 통하여 ②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서비스, 지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평가, 공공정책 분석 등을 실시한다. ⑤ 실시된 활동관련 정보가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자원임을 입증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보급한다. </p>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p> 제12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의 현황 및 복지실태에 관련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주요 복지시책에 관한 연차보 </p>	<p> 제12조 <u>명확한 측정 진보지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에 관한 제반적인 만족도 (2) 지적장애인을 위한 제반서비스가 지적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선하였는지의 정도 ① 이용하는 서비스, 지</u> </p>

제 4 장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초안』 개선방안

종속변인 / 잠정 독립변인	한국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초안	개 선 안
	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원, 원조의 종류, 강도, 시 기를 선택 및 통제 ② 자 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 모든 활동에 참여 ③ 지적장애인을 위 한 지원·원조에 접근 편 의성. 그 밖의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 없었는지, 그 리고 부당하게 감금 또는 격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표 측정

제 5 장 요약 및 권고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제를 평가하고자 2007년 3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소속 법률제정추진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 법률안의 개선을 위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제가 가장 잘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의 ‘지적장애인 복지시설’관련 법률인 미합중국법전 제42편 제144장과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을 채택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 관련부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있어 한국의 법률안과 미국법률의 유사체계 잠정독립변인으로는 ‘연령의 구분, 지적장애범위, 기능적 한계범위, 영·유아에의 적용범위’를,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부분에 있어 잠정독립변인으로 ‘자립생활지원, 그룹홈 이용, 그룹홈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실시’를 도출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부분에 있어 ‘지적장애인의 권리,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잠정독립변인으로 삼았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태조사와 관련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지적장애인 연구센터의 설치,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를 잠정독립변인으로 설정했다.

비교분석 결과, 지적장애 발생의 연령범위를 기존의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또는 그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능적 범위도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 있어 그 기능이 어느 한 가지만 해당하는 선에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수정해 법률적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단, 영·유아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 간주해야 함을 지적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관련 법률안에서 언급한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에 완전 통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관련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②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예방한다. ③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④ 초기개입서비스, 단기보호, 활동보조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지원고용서비스, 발달장애인을 고령보호자가 돌보는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재활기술·원조기술 제공 및 원조기술 서비스를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한다”는 조항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지적장애인 권리규정 및 지원위원회 관련 법률안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차별과 인권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 수정안으로 “지적장애인은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기에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및 치과서비스 제공 ② 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둘 권리 등을 가진다. ③ 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

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④ 지적장애인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의 긴급한 신체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용으로서 신체적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금지 ⑤ 지적장애인에 대한 약물의 과도한 사용금지, 또한 체벌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대용으로서 또는 그들을 위한 서비스, 치료, 재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약물의 사용금지 ⑥ 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지적장애인의 근친 또는 후견인이 사전공지 없이 해당 장애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지적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1) 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옹호자로서 봉사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 또는 지원한다. (2) 보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해당연도에 달성된 위원회의 목표 ② 미달성된 목표 및 목표달성을 저해한 요인들 ③ 협의회의 활동지원 또는 실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3) 위원회는 원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정을 확인하고, 그들이 포괄적인 지역사회특별적응서비스 또는 전문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지원·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반 이상”임을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 기준을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한 세부조항

으로 “①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조사 및 지속적인 리더십교육, 직접서비스교육, 임상교육, 직원교육을 포함한 간학문적인 서비스 사전조사 및 학생과 특별연구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②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전문직 보조원, 정책입안자,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③ 시범 및 활동모델을 통하여 ②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서비스, 지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평가, 공공정책분석 등을 실시한다. ⑤ 실시된 활동관련 정보가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자원임을 입증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보급한다”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1)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역량구축, 시스템변경활동에 관한 제반적인 만족도 (2) 지적장애인을 위한 제반서비스가 지적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선하였는지의 정도 ① 이용하는 서비스, 지원, 원조의 종류, 강도, 시기를 선택 및 통제 ②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지역사회 의 모든 활동에 참여 ③ 학대, 무시, 경제적 및 성적착취, 법적 및 인권침해 없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감금 또는 격리되지 않았는지,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원조에 접근 편의성”의 내용이 언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그 밖에 일본의 지적장애인 관련 법률을 참조할 때, 지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지적장애인 복지사 제도를 도입해 지적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또는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률안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초안의 수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방법론이 갖는 내재된 한계성으로 인해 위 결과의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한다.

첫째, 최대유사체계분석 기법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한국의 법률안과 미국의 법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잠정독립변인에 따른 비교대상이 해당 법률에 그치고 있어 단순한 법률조항의 나열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지적장애인 관련 세부법령(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사회복지 사업법, 재개발 사업 및 신도시 건설 등에 있어 그룹홈 시설관련 규제 등)에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본 연구가 위 비교방법기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과생된 연구 설계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초안 개선안을 세부적인 조항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관련 세부법령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 관련 미국법률을 바탕으로 한 운용례 및 판례 등을 소개하고 그 적용점을 찾아가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 밝힌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 성과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법률과의 비교분석 결과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운용실태를 반영한 개선안의 제고가 필요하다. 제2장 제1절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시스템의 실태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그 운용실태가 법률적 맥락에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법률내용이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다. 앞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의 운용실태와 해당 법률 및 조항과의 연결성을 수요자 중심에서 제고하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령, 그룹홈 시스템을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시의 장애인을 위한 조례와 운용실태의 연관성을 지적장애인의 요구에 맞춰 재조명하는 작업은 전반적인 법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혜규 (2001),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동향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
- 구중희 (1997), 『장애인복지와 재활』, 서울: 동일문화사.
- 김명선 (1995), 『정신지체 연구』,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
- 김미경 외 (2003), 『그룹홈 이해』, 서울: 비전북출판사.
- 김용진 외 (2003), 『비교지역 연구전략: 방법론적 성찰』, 서울: 인간사랑.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2003),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 이정호 (1987),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최재성 · 황성동 · 장비 · 최정균. (2001),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실태분석을 통한 성격규명과 활성화 방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99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및 모범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위원회.

2. 논 문

- 강효영 (2008), “그룹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경험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문헌

- 김미령 (2001), “장애인 그룹홈 직원의 직무만족도와 업소장애인의 지역사회 회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철 (1993), “분권화와 지역주민복지의 상관성: 보호대상 주민집단에 대한 광역정부의 복지관여 추이분석”, 지방자치연구, 6(1), 87-101.
- 김종인 (2000),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복지포럼.
- 박영석 (2000), “주거형태가 정신지체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선현철 (2008),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진희 (200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정신지체 장애인의 훈련형 그룹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복철 (2004), “한국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엄현정 (2005), “한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우상열 (2004), “장애인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02), “정신지체인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의 슈퍼비전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균 (2001), “정신지체인을 위한 그룹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혁 · 이선영, (2005). “정신장애인 그룹홈에 대한 주민의식과 반응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21.
- 하춘자 (2006), “장애인의 그룹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혜 (2000), “장애인그룹홈 행정서비스 개선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외국서적

- Albrecht, G. (1992). *The Disability Business*. London: Sage.
- Healy, J. (1998). *Welfare Option: Delivering Social Service*. Sidney: Allen and Unwin.
- Hill, M. (2002). *Understanding Social Policy*. Oxford: Blackwell.
- Zarb, G. (Eds.). (1995). *Removing Disabling Barriers*. Policy Study Institute.

부
속

<부 록>

지적장애인 등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초안

[2007년 3월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법률제정추진위원회 작성]

제 1 장 총 칙

연 제 1 조(목적) 이 법은 지적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이나 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장애인 등의 잠재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지적장애인 등”이라 함은 18세 이전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활동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지적장애인 등의 범주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장애인을 포함하며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조(지적장애인 등의 권리) ①지적장애인 등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지적장애인 등은 적절한 치료, 복지서비스, 재활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지적장애인 등은 경제적 생활 보장의 권리, 일할 권리,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할 권리 및 후견인을 둘 권리 등을 가진다.
- ④지적장애인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및 경제적 착취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⑤지적장애인 등은 학대 또는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⑥지적장애인 등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본인의 심신상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연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지적장애인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과 이에 필요한 제반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조치 및 예산집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제 5 조(경비의 우선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4조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 6 조(협조체제의 구축) 국가는 제4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등

연 제 7 조(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①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복지에 관련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각 시·도에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2. 지적장애인 등의 능력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적장애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거주 및 직업재활·고용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및 그에 필요한 관련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6. 지적장애인상담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적장애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8 조(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위원장을 포함하여 성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지적장애인지원위원장은 최소한 매분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 9 조(지적장애인복지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복지및 권익옹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의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2. 지적장애인 등의 판정, 복지실태 파악 및 필요한 조사 및 지도
3. 지적장애인 등의 능력개발, 교육 및 고용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옹호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5. 기타 지적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원조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

③복지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 복지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복지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복지센터는 사업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적장애인 등 당사자, 부모, 후견인 등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2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적장애인연구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

- 여 지적장애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의 현황 및 복지실태에 관련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주요 복지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복지지원

- 연 제13조(지적장애인 상담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지적장애인 등의 권익옹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적장애인상담원을 둔다.

- 제14조(지적장애인상담원) ①시·군·구의 지적장애인상담원 중 1인 이상은 지적장애인복지사이어야 한다.
- ②지적장애인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등에게 전문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실시 및 직

업보조인에 의한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시 지적장애인 등의 우선 고용에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주가 지적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직업전환 및 적합직종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적장애인 등의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적장애인 가족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단기보호시설, 위탁가정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전관리 등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주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복지시설 이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이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자립생활 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서비스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 등의 재활 및 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을 통

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적장애인복지사) 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 지적장애인지원시설 또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지적장애인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지적장애인복지사 자격취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등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여 평생복지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영유아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지적장애인의 공보육 및 통합보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제23조(학령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치료교사와직업교사의 교육, 파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지적장애학생의 방과후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적장애 전담 장학사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료교사와 직업교사의 교육, 파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적장애전담 장학사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성인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 지적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내 등록 지적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제 5 장 벌 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적장애인 등을 이용하여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를 한 자
2. 지적장애인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3. 지적장애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상 알게 된 지적장애인 등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지적장애인 등을 공중에 관람시키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